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1 선고 2017가합516310(본소), 2017가합564500(반소) 판결
[공사대금 · 손해배상금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3. 2. 9 선고 2022나2001242(본소), 2022나2001259(반소)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1 선고 2017가합516310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송재우, 이근원

피고(반소원고)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이강만

변론 종결2021. 10. 27.

판결 선고2021. 12. 1.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4,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부터 2021. 12. 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790,037,4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6.부터 2021. 12. 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5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3,293,414,722원 및 그 중 758,087,740원에 대하여는 2016. 7. 1.부터, 2,460,526,982원에 대하여는 2016. 7. 20.부터, 74,8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1.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4,491,846,578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도급계약의 체결

발주자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2014. 11. 24. 수급인인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주시

D에 제약공장(이하 '이 사건 제조소'라 한다)과 관련한 설계 및 시공용역을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원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지 부분

- 착공 연월일: 2014. 12. 20.
- 준공예정 연월일: 2015. 12. 20.
- 계약금액: 15,70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 지체상금률: 계약금액의 1/1,000%

특약사항

3. 계약서상 준공완료일은 관공서 준공검사 및 설비의 적격성 검사(피고 공사분) 완료보고서의 승인시점으로 한다.

나. 설계용역계약의 체결 등

1) 수급인인 피고는 이 사건 원도급계약상 설계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2014. 11. 24. 하수급인인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3조(용역기간)

용역기간의 이행은 2014. 11. 24. ~ 2015. 12. 20.(사용승인 완료 시까지)로 한다.

제4조(용역범위)

1.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할 용역의 범위는 인허가부터 준공도서 완료까지로 하며, 이외의 사항은 피고와 원고의 합의에 따라 피고의 승인 하에 용역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2. 용역범위

기본설계·건축 인허가 관련도서	실시설계시공용 실시도서준공도서	GMP 설계(크린판넬 검토 포함)기계설비 설계전기설비 설계통신설비 설계소방설비 설계물량산출서 및 내역서 포함	업무수행에 필요한 건축도면들은 지원함
기타	장비류 선정에 대한 비교자료		

제6조(대금의 지급)

1. 설계업무의 용역비는 그 지불시기 및 지불금액을 아래와 같이 이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피고와 원고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허가접수 시	2014. 12.	17,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건축설계 및 URS1) User Requirements Specification의 약칭으로서, 이 사건에서는 C이 제공하는 '사용자 요구 규격서'를 의미한다. 확정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실시설계 및 GMP2) Good Manufacturing Practice의 약칭으로서, 세계보건기구가 1968년 제정한 의약품 등의 제조나 품질관리에 관한 규칙이다. GMP는 의약품의 안전성이나 유효성을 보장하는 기본조건이다. 설계 완료 시	2015. 1.	42,5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준공 시	2015. 12.	25,5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계	85,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2. 피고는 용역비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피고의 조건으로 지불한다.

제7조(성과품의 승인)

1.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성과품에 대하여 14일 이내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피고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피고가 지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재작성, 수정, 보완 등을 하여 다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14일 이내에 승인 여부에 대한 통지가 없을 경우에는 승인된 것으로 간주한다.

2) 원고는 2014. 11. 25.경 피고에게 기본설계도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가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상 1차 대금인 18,700,000원(= 위 17,000,000원 + 부가가치세 1,7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공사 하도급계약의 체결 등

1) 수급인인 피고는 이 사건 원도급계약상 시공용역 중 기계설비와 관련된 부분을 수행하기 위하여

2015. 7. 24. 하수급인인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표지 부분

- 착공 연월일: 2015. 7. 24.
- 준공예정 연월일: 2015. 12. 20.
- 계약금액: 3,58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 지체상금률: 계약금액의 3/1,000%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제3조(추가공사)

③ 피고의 지시에 따라 원고가 추가로 시공한 공사에 대하여 피고는 C로부터 증액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증액 지급한다.

제24조(검사 등)

① 피고는 원고로부터 준공 또는 기성 부분을 통지받은 때에는 목적물을 검사한다.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피고와 원고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한 방법으로 정한다.

2) C은 아래와 같이 각 행정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제조소와 관련한 허가 등을 받았다.

2015. 12. 9.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 증명
2015. 12. 17.	원주시장	이 사건 제조소에 대한 건축물 사용승인
2015. 12. 17.	원주소방서장	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
2016. 5. 10.	원주시장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3) 피고는 2015. 9. 24.부터 2016. 5. 20.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대금 중 일부인 3,179,912,260원을 지급하였다.

4) 원고는 2016. 7.경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시공용역을 모두 마쳤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제조소에서 종국적으로 철수하였다.

5) 피고는 2016. 11. 13. C에 이 사건 제조소에 관한 운전적격성 평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고,

C은 그 무렵 위 결과보고서를 승인하였다.

라. 피고와 C 사이의 소송 진행

- 1) 피고가 2018. 4. 4. C을 상대로 이 사건 원도급계약상 미지급 대금, 추가공사대금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C도 이후 피고 상대로 이 사건 원도급계약상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금, 이 사건 원도급계약상 시공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 한다).
- 2)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1. 6. 9. 2018가합522212(본소), 544381(반소)호로 피고 및 C의 각 채권을 아래와 같이 판단하여, 상계 후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반소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원도급계약상 미지급 대금	2,283,600,000원
추가공사대금	673,568,592원
C 채권	
이 사건 원도급계약상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금	700,119,712원
이 사건 원도급계약상 시공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3,275,020,000원

- 3) 이에 피고 및 C이 항소하였고, 이 사건 관련 소송은 서울고등법원 2021나2025463(본소), 2025470(반소)호로 소송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30호증, 을 제3, 27, 42, 4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취지 구성의 요지

가. 본소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상 미지급 대금 74,800,000원,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미지급 대금 758,087,740원, 추가공사대금 2,460,526,982원의 합계액인 3,293,414,722원(= 위 74,800,000원 + 위 758,087,740원 + 위 2,460,526,98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반소청구

1) 이 사건 반소장에 따른 구성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불완전이행에 따른 1,363,128,318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시공 지연에 따른 3,886,806,000원 상당의 지체상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다만,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불완전이행에 따른 1,363,128,318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758,087,740원 상당의 미지급 대금채권을 공제 내지 상계하면 605,040,578원(= 위 1,363,128,318원 - 위 758,087,740원)이 남는다.

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605,040,578원,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시공 지연에 지체상금 3,886,806,000원의 합계액인 4,491,846,578원3) (= 위 605,040,578원 + 위 3,886,80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2021. 4. 21.자 준비서면에 따른 구성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불완전이행에 따른 1,334,773,487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363,141,422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시공 지연에 따른 3,886,806,000원 상당의 지체상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다만, 피고의 원고에 대한 5,584,720,909원(= 위 1,334,773,487원 + 위 363,141,422원 + 3,886,806,000원) 상당의 총 채권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582,205,670원 상당의 미지급 대금채권, 852,443,964원 상당의 추가공사대금채권을 상계하면 4,150,071,275원(= 위 5,584,720,909원 - 위 582,205,670원 - 위 852,443,964원)이 남는다.

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4,150,071,275원4)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소 관련 채권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상 미지급 대금채권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 제4조 용역범위의 '시공용 실시도서 및 준공도서'를 모두 제출하여 그 설계용역을 마쳤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상

74,800,000원 상당의 미지급 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 제4조 용역범위의 '시공용 실시도서 및 준공도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불완전한 형태의 설계도면 등 초안을 제출하였다. 오히려 피고가 'E회사'를 고용하여 이 사건 제조소의 준공도면을 작성하였다.

2) 판단 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5. 4. 13. 이전에 '기계설비 1차 출도도면'을, 2015. 5. 6. '기계설비 2차 출도도면'을 각 제출한 사실, 피고가 그 무렵 위 각 도면을 C에 전달하였고, C이 위 각 도면의 수정·보완을 요구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나) 기초사실, 위 가)항의 각 인정 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 제4조 용역범위의 '시공용 실시도서 및 준공도서'를 모두 제출하여 그 설계용역을 마쳤다는 점을 추인할 수 있다.

① 피고는 2015. 5. 15. 공사 하도급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을 실시하였고, 위 입찰 결과 2015. 7. 24.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가 위 입찰 무렵 '시공용 실시도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위 입찰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2015. 7. 24. 무렵 원고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고 있었기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까지 체결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C은 2015. 12. 17. 원주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제조소에 관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다. 현행 건축법상 2006. 5. 9. 이후에는 건축허가 신청 시 기본설계, 실시설계도서를 전부 제출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공사감리자의 완료보고서와 함께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 건축허가 후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 설비, 내부구조 등에 관한 설계 변경사항을 반영한 설계도면을 제출하게 하고 있으므로(서울중앙지방법원이 발행한 2016년 개정판 건설감정실무 제53쪽 참조), C은 2015. 12. 17. 무렵 그때까지의 구조, 설비, 내부구조 등에 관한 설계 변경사항을 반영한 설계도면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 제3조는 용역기간을 "사용승인 완료 시까지", 제6조는 대금의 최종 지급시기를 "준공 시"로 정하고 있다. 위 "사용승인" 내지 "준공"은 C이 원주시장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제조소에 관한 건축물 사용승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그 이후 이 사건

제조소의 구조 등이 변경되더라도, 그러한 변경 부분을 반영한 설계도면 등을 작성하는 설계용역은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의 용역범위를 벗어난다. 다만, 원고가 당초 작성한 설계도면 등에 설계상 하자가 있다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에 대한 하자보수책임 내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 등을 질 여지가 있을 뿐이다.

④ 피고가 'E회사'를 고용하여 이 사건 제조소의 준공도면을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

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상 74,800,000원(=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상 전체 대금 85,000,000원 + 부가가치세 8,500,000원 - 기지급금 18,700,000원) 상당의 미지급 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미지급 대금채권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① 이 사건 제조소에 대한 건축물 사용승인이 마쳐진 2015. 12. 17. 혹은 ②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최후 공정인 T.A.B 공정6) 을 마친 2016. 6. 8.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시공용역을 모두 마쳤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758,087,740원 상당의 미지급 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2) 설령 원고가 위 시공용역을 모두 마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제조소에서 철수한 2016. 7.경까지의 기성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C이 이 사건 제조소에 관한 운전적격성 평가 결과보고서를 승인하면, 원고가 이때 비로소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시공용역을 모두 마쳤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2016. 7.경 이 사건 제조소에서 철수하였고, C이 2016. 11. 13. 무렵 위 결과보고서를 승인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시공용역을 모두 마쳤다고 볼 수 없다.

2) 2016. 7.경까지의 기성대금은 3,762,117,910원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3,179,912,26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남은 기성대금은 582,205,650원(= 위 3,762,117,910원 - 위 3,179,912,260원)이다.

2)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예정하고 있는 완공의 의미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4, 37, 47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F의 감정 결과7)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예정하고 있는 완공은 C이 이 사건 제조소에 관한 운전적격성 평가 결과보고서를 승인할 정도의 상태에 이른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제24조는 "피고와 원고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한 방법"으로 준공 여부를 검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제조소가 제약공장으로서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위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한 방법이란 식약처가 이 사건 제조소에서 의약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것을 허가할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어야 한다. 원주시장의 사용승인은 이 사건 제조소가 건축법상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의미에 불과하다.

② T.A.B 공정은 제약공장으로서의 일부 기능인 공기조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공정이다. 반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공기조화 시스템 이외에 이 사건 제조소가 제약공장으로서 기능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수급탕 배관, 오수 배관, 정제수 배관 등을 계약내역에 포함하고 있다.

③ 이 사건 제조소가 제약공장으로서 기능할 수 없는데도,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시공용역을 완료하였다고 본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하도급대금을 모두 지급하라고 다시 다른 하도급업체에 공사비를 이중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3)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시공용역을 마쳤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1 내지 13, 2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7.경까지 하도급공사를 진행한 사실, 2016. 5. 23. 이 사건 제조소 중 관리동에 대한 T.A.B 공정을 수행한 사실, 2016. 6. 8. 이 사건 제조소 중 생산동에 대한 T.A.B 공정을 수행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을 제17, 20, 23, 4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위 가)항의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시공용역을 마쳤다는 점을 추인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T.A.B 공정은 필요한 경우 공기조화 시스템을 보완·보수하는 공정을 포함하고 있다. 원고가 가장 최근에 작성한 2016. 6. 8.자 T.A.B. 공정 보고서의 표제도 "T.A.B 1차 보고서"로서 추가적인

보완·보수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② 원고는 2016. 7.경 이 사건 제조소에서 철수하였고, 피고가 2016. 10.경 주식회사 G 등을 통하여 새롭게 T.A.B 공정을 수행하였으며, C은 2016. 11. 13.에야 이 사건 제조소에 관한 운전적격성 평가 결과보고서를 승인하였다.

4) 미지급 대금채권의 액수에 관한 판단 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2016. 6. 8.

원고에게 "기성부분 검사 및 지급기일 확인"이라는 제목의 공문으로 8회차 기성대금

565,000,000원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56,500,000원의 합계액인 621,500,000원(= 위

565,000,000원 + 위 56,500,000원)을 지급할 예정이라는 점을 안내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원고가 2016. 7.경 이 사건 제조소에서 철수할 때까지 수행한 시공용역에 대한 미지급

대금채권이 621,500,000원인 점을 추인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미지급 대금채권이 621,500,000원을 초과한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칙적으로 기성대금은 "기성고 비율을 약정 공사비에 적용"하여 산정하고, 기성고 비율은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에다가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소요될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 가운데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② 감정인 F는 이 사건의 2019. 9. 4.자 감정서에서 원고가 이 사건 제조소에서 철수한 2016.

7.경까지의 기성대금이 3,762,117,910원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감정인 F는 위 ①항의

산정방법으로 기성대금을 산정하지 않았다.

③ 설령 감정인 F가 산정한 기성대금에 따르더라도, 미지급 대금채권은 582,205,650원(= 위

기성대금 3,762,117,910원 - 기지급금 3,179,912,260원)이어서, 위 621,500,000원보다 그

금액이 적다.

5)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621,500,000원 상당의 미지급

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다. 추가공사대금채권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지시로 인하여 발생한 2,460,526,982원 상당의

추가공사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제3조가 "피고의 지시에 따라 원고가 추가로 시공한 공사에 대하여 피고는 C으로부터 증액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증액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지시로 인하여 추가로 시공한 부분에 대한 추가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3) 감정인 F는 이 사건의 2019. 9. 4.자 감정서에서 원고가 피고의 지시로 인하여 추가로 시공한 부분에 대한 추가공사대금을 아래와 같이 산정하였다.

1	압축공기제조설비 100HP 시스템 전체 및 장비 50HP 에어헷더 등 추가	173,627,275원
2	공조덕트 하부리턴풍도 및 스웰디퓨저 추가 설치	55,162,580원
3	배관 냉각탑 위치, 물량 변경, 염소소독장치 신설	13,710,211원
4	소방 스프링클러 배관 물량 등 증가	54,898,155원
5	공조덕트 재질, 사양변경, 덕트 추가, 이동공사 등	76,454,590원
6	정제수 시스템 배관물량, 사양, 위치 변경 등	268,558,062원
7	온수가열기 설계변경	1,884,879원
8	도시가스조정기, 가스누출 감지기 등 추가시공, 실험가스 물량 증가	14,341,739원
9	국소배기장치 사양변경	76,133,156원
10	압축공기 배관 재질, 사양변경, 클린부스 및 암후드 위치변경, 추가시공 등	31,216,154원
11	오배수관 관경, 우수배관 신설, 헤파박스 추가, 초음파퇴치기 교체	47,107,095원
12	급수급탕배관공사, 공조배관공사	39,350,068원
합계	852,443,964원	

4) 원고는 위 3)항의 산정 금액이 지나치게 적어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7, 14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852,443,964원을 초과하는 추가공사대금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피고가 위 3)항 중 다투는 부분 및 이에 대한 판단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3	[1-3-1. 냉각탑 위치 변경공사(냉각수)][1-3-2. 냉각탑 위치 변경공사(급수)]원고가 당초 냉각탑 용량을 잘못 설계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보완하여 설계도면과 다른 용량의 냉각탑을 시공하는 과정에서 그 위치까지 변경하여 시공하였다. 피고가 원고에게 냉각탑 위치 변경을 지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은 추가공사가 아니다.[1-3-7. 염소소독장치 신설(신규)]원고가 당초 염소소독장치를 누락하여 잘못 설계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추가공사가 아니라 설계상 하자를 보완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 주장 인정, 추가공사대금 부정]피고가 원고에게 냉각탑 위치 변경을 지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가 원고에게 냉각탑의 용량 변경을 지시하였더라도, 냉각탑의 용량 변경이 불가피하게 냉각탑의 위치 변경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이 부분 공사비 8,049,492원(= 7,135,223원 + 914,269원)은 추가공사대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피고 주장 인정, 추가공사대금 부정]C이 원주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제조소에 대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염소소독장치가 필요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이 부분 공사비 5,660,719원은 추가공사대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4	[1-4-3. 생산동 스프링클러 배관변경공사][1-4-4. 관리동 스프링클러배관변경공사]원고가 처음부터 설계한 대로 시공된 공사이므로, 이 부분은 추가공사가 아니다.[3-4-5. 생산동 3층 공조실 헤드 추가공사]원고가 당초 공조실 헤드의 위치를 잘못 설계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추가공사가 아니라 설계상 하자를 보완한 것에 불과하다.[3-4-7. 자동소화장치 추가공사]원고가 당초 자동소화장치를 누락하여 잘못 설계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추가공사가 아니라 설계상 하자를 보완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 주장 배척]감정인 F는 이 사건의 2019. 9. 4.자 감정서에서 변경시공이 있었다는 의견을 밝혔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 주장 배척]감정인 F는 이 사건의 2019. 9. 4.자 감정서에서 구조물의 상호 간섭으로 인하여 공조실 헤드의 위치가 변경되었다는 의견을 밝혔다. 살피건대, 위 구조물의 상호 간섭이 당초 설계상 잘못 때문인지 아니면 피고의 다른 추가적인 공사 지시 때문인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 주장 인정, 추가공사대금 부정]C이 원주소방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제조소에 대한 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을 받기 위해서는 자동소화장치가 추가로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이 부분 공사비 19,996,652원은 추가공사대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5	[2-6. 과립건조실 덕트 이동공사]이 부분은 추가공사가 아니라 원고의 시공상 잘못을 보완한 것에 불과하다.[2-10. 물류창고 덕트 수정공사]원고가 당초 물류창고 덕트를 잘못 설계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추가공사가 아니라 설계상 하자를 보완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 주장 배척]감정인 F는 이 사건의 2019. 9. 4.자 감정서에서 변경시공이 있었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위 변경시공이 원고가 당초 저지른 시공상 잘못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 주장 배척]감정인 F는 이 사건의 2019. 9. 4.자 감정서에서 구조물의 상호 간섭(기류패턴의 이상)으로 인하여 덕트의 위치가 변경되었다는 의견을 밝혔다. 살피건대, 위 구조물의 상호 간섭이 당초 설계상 잘못 때문인지 아니면 피고의 다른 추가적인 공사 지시 때문인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	[3-5-1. 정제수 배관 물량 증가공사][3-5-2. P.W generation system 사양변경]원고가 당초 정제수 사용점을 잘못 설계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추가공사가 아니라 설계상 하자를 보완한 것에 불과하다(2021. 7. 16.자 준비서면 제28쪽 참조).	[피고 주장 배척]감정인 F는 이 사건의 2019. 9. 4.자 감정서에서 변경시공이 있었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을 제4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변경시공이 원고가 당초 저지른 설계상 잘못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8	[3-5-4. 조정기, 누설경보기 등 추가공사][3-6. 실험가스 배관공사]원고가 당초 도시가스 조정기 등을 잘못 설계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추가공사가 아니라 설계상 하자를 보완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 주장 인정, 추가공사대금 부정]C이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으로부터 이 사건 제조소에 대한 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 증명을 받기 위해서는 도시가스 조정기 등이 추가로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이 부분 공사비 14,341,739원(= 8,915,058원 + 5,426,681원)은 추가공사대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9	[4-1. 국소배기장치 사양변경공사]원고는 이 항목에 관하여 추가설치 및 사양변경을 한 사실이 없고, 감정인 F도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이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은 추가공사가 아니다.	[피고 주장 배척]감정인 F는 이 사건의 2019. 9. 4.자 감정서에서 이 사건에서 추가된 국소배기장치 2대(품명: CDC-PP-201, CDC-PP202)의 설치비 및 인건비를 산정하였다. 반면, 감정인 F는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위 2대가 아닌 다른 품명의 국소배기장치에 대해서 감정을 하였을 뿐이다(을 제45, 46호증의 각 기재 참조).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이루어진 감정 자료를 근거로 드는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국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804,395,362원(= 전체 감정금액 852,443,964원 - 항목3 중 일부 제외 금액 8,049,492원 - 항목3 중 일부 제외 금액 5,660,719원 - 항목4 중 일부 제외 금액 19,996,652원 - 항목8 중 일부 제외 금액 14,341,739원) 상당의 추가공사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4. 반소 관련 채권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불완전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판단

- 1) 피고는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시공용역을 마치기 위하여 다른 업체들에 1,334,773,487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원고는 위 1,334,773,487원의 지출과 원고의 불완전이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 2) 살피건대, 을 제8 내지 24, 28 내지 36, 39 내지 41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F의 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시공용역을 마치기 위하여 다른 업체들에 1,073,844,914원을 지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을 제10호증의 1	24,564,440원, 16,922,580원, 21,742,620원	63,229,640원
을 제10호증의 2	2,005,700원, 2,524,760원, 6,683,180원	11,213,640원
을 제10호증의 3	10,396,060원	10,396,060원
을 제11호증의 1	1,344,000원, 672,000원, 2,212,000원	4,228,000원
을 제11호증의 2	444,000원, 888,000원, 1,600,000원	2,932,000원
을 제11호증의 3	414,000원, 798,000원, 1,100,000원	2,312,000원
을 제12호증의 1	51,150,000원	51,150,000원
을 제12호증의 2	16,417,750원	16,417,750원
을 제28호증의 2	25,300,000원	25,300,000원
을 제29호증	14,845,600원	14,845,600원
을 제30호증의 2	21,230,000원	21,230,000원
을 제31호증	17,600,000원	17,600,000원
을 제32호증	64,350,000원, 7,150,000원	71,500,000원
을 제33호증	2,750,000원	2,750,000원
을 제34호증	14,300,000원	14,300,000원
을 제35호증	4,950,000원	4,950,000원
을 제36호증	35,209,474원	35,209,474원
을 제39호증	51,150,000원, 16,417,750원, 232,903,000원	300,470,750원

을 제10호증의 1	24,564,440원, 16,922,580원, 21,742,620원	63,229,640원
을 제40호증의 1	354,200,000원	354,200,000원
을 제40호증의 2	8,800,000원	8,800,000원
을 제41호증	40,810,000원	40,810,000원
합계	1,073,844,914원	

3) 반면, 앞서 든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시공용역을 마치기 위하여 다른 업체들에 위 1,073,844,914원을 초과하는 돈을 지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위 금액을 초과하여 주장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4) 그리고 기초사실 및 위 2)항의 인정 사실에 따르면, 위 1,073,844,914원의 지출과 원고의 불완전이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추인할 수 있다. 갑 제26, 2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추인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원고가 이와 관련하여 주장하는 부분도 이유 없다.

5) 결국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불완전이행에 따른 1,073,844,914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시공용역을 수행한 부분에 하자가 있고 그 하자를 보수하기 위하여 363,141,422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2) 감정인 F는 2020. 10. 10.자 추가감정서에서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아래와 같이 산정하였다.

1 정제수 설비 - EDI 교체, 기타	32,000,000원
2 덕트 하자 - 보온재 두께 축소 시공	11,179,270원
3 덕트 하자 - 덕트 사이즈 축소 시공	136,378,309원
4 폐수 배관 - 관경 및 재질 변경	44,618,880원
6 제습공조기 - 전용 냉동기 추가 설치	90,321,932원
7 제습공조기 - DHU-PP-101, 201 전등 설치	1,047,877원
8 보일러실 - 환기 추가 설치	2,597,577원
9 보일러실 - 후드 추가 설치	3,674,572원
10 스팀배관 - 코팅기 2, 3, 4, 호기 추가 설치	10,808,595원

1 정제수 설비 - EDI 교체, 기타	32,000,000원
11 스팀배관 - 헤더 석면가스켓 보수 교체	643,843원
12 스팀배관 - DHU-PP-101 스팀배관 보수	2,606,127원
13 집진기 - 부하 변동장치 11대 추가 설치	27,264,440원
합계	363,141,422원

3) 원고가 위 2)항 중 다투는 부분 및 이에 대한 판단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이 항목은 원고의 시공상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가 아니다.	[원고 주장 인정, 하자 부정]감정인 F는 2020. 10. 10.자 추가감정서에서 이 항목이 원고와 피고 중 누구의 잘못으로 발생한 하자인지 알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이 항목은 원고가 책임질 하자에서 제외된다.
2	이 항목은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시공용역을 완료한 후, 피고 내지 C이 하자가 없는데도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시공한 부분에 불과하다.	[원고 주장 배척]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원고가 이 사건 제조소에서 철수한 2016. 7.경 T.A.B 공정을 포함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시공용역을 완료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② T.A.B 공정은 필요한 경우 공기조화 시스템을 보완·보수하는 공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③ 피고가 2016. 10.경 주식회사 G 등을 통하여 새롭게 T.A.B 공정을 수행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보완·보수 작업이 있었으리라는 점을 추인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	이 항목은 애초에 설계도면 등에 없었던 사항이므로, 원고의 시공상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가 아니다.	[원고 주장 배척]감정인 F는 2020. 10. 10.자 추가감정서에서 이 항목과 관련하여 설계상 누락으로 겨울철 냉각탑 냉각수가 얼어버리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이는 설계상 하자로 판단되고, 피고는 원고의 설계상 하자담보책임도 이 부분 청구원인으로 추가하고 있다(2021. 7. 16.자 준비서면 제23쪽 참조). 따라서 이 항목은 원고가 책임질 하자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7	이 항목은 애초에 설계도면 등에 없던 사항이므로, 원고의 시공상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가 아니다.	[원고 주장 배척]감정인 F는 2020. 10. 10.자 추가감정서에서 이 항목과 관련하여 전등이 없어 점검구 내부를 살피는 데 불편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이는 설계상 하자로 판단되고, 피고는 원고의 설계상 하자담보책임도 청구원인으로 추가하고 있다(2021. 7. 16.자 준비서면 제24쪽 참조). 따라서 이 항목은 원고가 책임질 하자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기타 모든 항목	그 외 나머지 항목들은 원고가 피고의 지시를 받아 설치한 것으로서, 원고의 시공상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가 아니다.	[원고 주장 배척]감정인 F는 2020. 10. 10.자 추가감정서에서 그 외 나머지 항목들이 하자라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데, 그 하자의 발생이 피고의 지시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위 2), 3)항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시공용역을 수행한 부분에 하자가 있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331,141,422원(= 전체 감정금액 363,141,422원 - 항목1 제외 금액 32,000,000원)이다.

5) 다만, 이 사건 제조소에 관한 운전적격성 평가 결과보고서 제출일인 2016. 11. 13.부터

하자감정을 위한 현장조사가 시작된 2020. 8. 10.경까지 약 3년 9월이 경과하여 이 사건 제조소의 기계설비 등에 자연적인 노화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제조소의 기계설비 등에 발생한 하자가운데 자연적인 노화현상으로 인한 부분을 엄격히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 피고 내지 C의 사용·관리상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제조소의 기계설비 등의 하자가 확대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위 하자가 원고의 시공 부분에서 발생한 것인지 원고 철수 후 피고 내지 C의 시공 부분에서 발생한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위 인정 금액의 60%인 198,684,853원(= 위 331,141,422원 × 60%, 원 미만은 버림)으로 봄이 타당하다.

6) 결국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198,684,853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시공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채권에 관한 판단

1) 지체상금의 시기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준공예정 연월일 다음 날인 2015. 12. 21.부터의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지체상금의 종기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지체상금의 종기가 이 사건 제조소에 관한 운전적격성 평가 결과보고서 제출일인 2016. 11. 13.이라며, 이에 따라 계산한 지체상금이 3,886,806,000원이라고 주장한다.

(2) 원고는 ① 이 사건 제조소에 대한 건축물 사용승인이 마쳐진 2015. 12. 17.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시공용역이 완료되어 그 지체상금이 발생하지 않았다거나, ② 지체상금의 종기는 "피고가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공사를 시작할 수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시공용역을 완료할 수 있었던 시점"인데, 피고가 그 시점을 증명하고 있지 못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완공기한을 넘겨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있어서 그 지체상금 발생의 시기는 완공기한 다음날이고, 종기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이를 해제할 수 있었을 때를 기준으로 하여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같은 건물을 완공할 수 있었던 시점이다(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56112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5, 6, 25,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체상금의 종기는 2016. 11. 13.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제조소에서 철수한 2016. 7.경 T.A.B 공정을 포함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시공용역을 완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즉, 원고는 2016. 7.경 위 시공용역을 중단하였다.

② 피고가 2016. 7.경 이전부터 원고의 공사기간 준수를 촉구하거나 원고의 일시적인 태업 등을 지적하여 왔으나, 이를 이유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804,395,362원 상당의 추가공사대금을 필요로 하는 추가공사를 지시하였고, 이러한 지시로 인하여 늘어난 공사기간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지연기간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③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제조소에서 철수한 이후 순차적으로 다수의 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잔여 공사 등을 진행하였다. 피고가 위 계약 체결 등을 의도적으로 지체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제약공장의 기계설비 등을 설치해야하는 미완성 현장을 인수하여 잔여 공사 등을 수행할 다른 업체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④ 결국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시공용역을 종국적으로 중단한 2016. 7.경부터 피고가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위 시공용역을 완료할 수 있었던 시점은 이 사건 제조소에 관한 운전적격성 평가 결과보고서 제출일인 2016. 11. 13. 무렵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3) 원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귀책사유 유무 관련

(1)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공사를 지시하거나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기성대금 내지 추가공사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는 등 원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시공이 지연되었다고 항변한다.

(2)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지체일수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나, 지체일수가 공제되는 수급인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란 공사도급계약에서

예상하지 못하였던 사정이 발생하였고, 그 사정으로 인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예정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하였음을 입증하였어야 하는 것이지 단지 어떤 사유가 수급인의 귀책사유와 경합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될 가능성만 있는 때에는 배상예정액의 감액에서 고려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다60136 판결 등 참조).

(3) 살피건대, 감정인 F의 감정 결과에 따르더라도 피고의 지시에 따른 추가공사로 인하여 늘어난 공사기간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고, 달리 원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늘어난 공사기간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다만, 이러한 사정을 아래에서 살펴볼 지체상금 감액의 사정으로 삼는다).

나) 지체상금의 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의 범위 관련

(1)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계약금액 전체가 아니라 T.A.B 공정에 책정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T.A.B 공정은 이 사건 제조소 내의 모든 공기조화 시스템이 설계에서 의도한 대로 기능하는지 점검하여 문서화한 후 필요한 부분을 보완·보수하는 공정으로서, T.A.B 공정 이전의 공정과 완전히 분리되는 공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T.A.B 공정에 책정된 계약금액만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산정할 근거가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지체상금의 감액

가)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수급인이 그와 같은 일의 완성을 지체한 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 수급인이 약정된 기간 내에 그 일을 완성하여 도급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여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 법원은 민법 제39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지체상금을 예정한 동기, 실제의 손해와 그 지체상금액의 대비, 그 당시의 거래관행 및 경제상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약정에 따라 산정한 지체상금액이 일반 사회인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1386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체상금은 과다하므로 이를 50% 감액함이 타당하다.

① 지체상금의 시기인 2015. 12. 21.부터 지체상금의 종기인 2016. 11. 13.까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계약금액 3,938,000,000원에 그 지체상금률 0.003%를 대입하면, 그 금액이 3,886,806,000원(= 위 3,938,000,000원 × 0.003% × 329일)에 이른다. 즉, 지체상금 액수가 계약금액 액수와 거의 유사한 상태에 이른다.

② 피고는 2015. 11. 20.경 C에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금액 증가 및 금액 미확정으로 자재 준비기간 등 공사기간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요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원도급계약상 준공예정 연월일을 2015. 12. 20.에서 2016. 1. 20.로 연기하였다. 그런데도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준공예정 연월일을 연기하는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804,395,362원 상당의 추가공사대금을 필요로 하는 추가공사를 지시하였다. 이러한 이로 인하여 늘어난 공사기간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지연기간으로 보기 어렵다.

4)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시공 지연에 따른 1,943,403,000원(= 위 3,886,806,000원 × 위 50%) 상당의 지체상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5. 본소청구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각 채권의 원금 정리 등

본소 및 반소의 구성은 앞서 '2. 청구취지 구성의 요지'에서 본 바와 같고, 앞서 인정된 원고 및 피고 채권의 원금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원금표]

①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상 미지급 대금	74,800,000원
②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미지급 대금	621,500,000원
③ 추가공사대금	804,395,362원
피고 채권	
④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불완전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	1,073,844,914원
⑤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금	198,684,853원
⑥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시공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1,943,403,000원

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상 미지급 대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상 미지급 대금에 대하여 2016. 11.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구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 제6조 제2항은 "피고는 용역비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피고의 조건으로 지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2016. 11. 1.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상 미지급 대금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그 무렵 피고에게 그 지급을 청구한 사실을 추인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대하여 2016. 12. 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진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표]①항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상 미지급 대금 74,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의 판결 선고일인 2021. 12. 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고, 피고가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으므로, 위 미지급 대금과 위 손해가 정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¹⁰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상 채무불이행 및 피고의 손해를 특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미지급 대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표]②항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미지급 대금 621,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원금표] ④항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불완전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금표]②항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미지급 대금채권을 모두 공제한다고 항변한다.¹¹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가 2015. 7. 24. 피고에게,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지출한 자재비, 노무비 등 공사비를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계약금액에서 공제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 등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621,500,000원 상당의 [원금표]②항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미지급 대금채권은 1,073,844,914원 상당의 [원금표] ④항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불완전이행에

다른 손해배상채권으로 인하여 전부 소멸하였고, 452,344,914원(= 위 1,073,844,914원 - 위 621,500,000원) 상당의 [원금표] ④항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불완전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권만이 남는다. 결국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추가공사대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표]③항 추가공사대금 804,395,36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자동채권인 [원금표] ④항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불완전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권, [원금표]⑤항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 [원금표]⑥항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시공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채권과 수동채권인 [원금표]③항 추가공사대금채권을 상계한다고 항변한다.12) 각 채권의 액수 및 이행기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고, 그 상계적상일은 2016. 7.경이다.

자동채권	[원금표] ④항 채권	452,344,914원14) 위 2) 나)항에서 공제 후 남은 금액이다.	2016. 7.경15)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제조소에서 철수한 2016. 7.경부터 각 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원금표] ⑤항 채권	198,684,853원		
[원금표] ⑥항 채권	1,943,403,000원		
수동채권	[원금표] ③항 채권	804,395,362원	

라) 결국 수동채권인 [원금표]③항 채권은 상계적상일인 2016. 7.경에 소급하여 전부 소멸하였고, 각 자동채권은 2016. 7.경에 소급하여 민법 제499조, 제477조 제4호에 따라 그 액수에 비례하여 소멸하여 아래와 같은 금액이 남았다.

[원금표] ④항 채권	312,096,858원16) $452,344,914원 - [804,395,362원 \times 452,344,914원 / (452,344,914원 + 198,684,853원 + 1,943,403,000원)]$, 원 미만은 반올림.
[원금표] ⑤항 채권	137,083,267원17) $198,684,853원 - [804,395,362원 \times 198,684,853원 / (452,344,914원 + 198,684,853원 + 1,943,403,000원)]$, 원 미만은 반올림.
[원금표] ⑥항 채권	1,340,857,280원18) $1,943,403,000원 - [804,395,362원 \times 1,943,403,000원 / (452,344,914원 + 198,684,853원 + 1,943,403,000원)]$, 원 미만은 반올림.

마) 결국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다.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위 공제 및 상계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원금표]④항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불완전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 312,096,858원, [원금표]⑤항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금 137,083,267원, [원금표]⑥항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시공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1,340,857,280원의 합계액인 1,790,037,405원(= 위 312,096,858원 + 위 137,083,267원 + 위 1,340,857,28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9. 26.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의 판결 선고일인 2021. 12. 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민수

판사박성민

판사김성준

- 1) User Requirements Specification의 약칭으로서, 이 사건에서는 C이 제공하는 '사용자 요구 규격서'를 의미한다.
- 2) Good Manufacturing Practice의 약칭으로서, 세계보건기구가 1968년 제정한 의약품 등의 제조나 품질관리에 관한 규칙이다. GMP는 의약품의 안전성이나 유효성을 보장하는 기본조건이다.
- 3) 피고가 반소 청구취지로 구하는 돈이다.
- 4) 그러나 피고는 반소 청구취지 액수 자체를 변경하지는 않았다.
- 5) 피고가 자신의 채권으로 원고의 채권을 조정, 공제 혹은 상계한다고 주장·항변하고 있으므로, 원·피고 채권의 존재 및 범위를 먼저 살펴보고, 각 청구 자체에 대한 판단은 아래 5항에서 한꺼번에

살펴보는 형식으로 서술하였다.

6) Testing(시험), Adjusting(조정), Balancing(평가)의 약칭으로서, 이 사건 제조소 내의 모든 공기조화 시스템이 설계에서 의도한 대로 기능하는지 점검하여 문서화한 후 필요한 부분을 보완·보수하는 공정이다.

7) 감정인 F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행한 감정 자료는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① 이 사건의 2019. 9. 4.자 감정서	없음.
② 이 사건의 2020. 8. 17.자 감정보완회신서	
③ 이 사건의 2020. 10. 10.자 추가감정서	
④ 을 제45호증(감정인 F가 수행한 이 사건 관련 소송의 2019. 9. 2.자 감정서)	① 내지 ③항 감정 자료와 감정목적물이 일부 중첩된 부분이 존재하는데, 그와 같이 중첩된 부분의 항목 명칭, 감정내용 및 감정금액이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다.
⑤ 을 제46호증(감정인 F가 수행한 이 사건 관련 소송의 2020. 1. 9.자 감정보완회신서)	

8) 감정인 F가 이 사건의 2019. 9. 4.자 감정서에서 분류하고 있는 항목 번호를 따랐다. 이 항목은 다시 세부 항목으로 나뉜다.

9) 감정인 F가 이 사건의 2020. 10. 10.자 추가감정서에서 분류하고 있는 항목 번호를 따랐다.

10) 2017. 6. 29.자 준비서면 제16면 참조.

11) 2017. 12. 11.자 준비서면 제3면 참조.

12) 2021. 4. 21.자 준비서면 제10면 하단 참조.

13)민법 제492조 제1항 소정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라 함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지는 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다100067(본소), 100074(반소) 판결 등 참조].

14) 위 2) 나)항에서 공제 후 남은 금액이다.

15)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제조소에서 철수한 2016. 7.경부터 각 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16) $452,344,914\text{원} - [804,395,362\text{원} \times 452,344,914\text{원} / (452,344,914\text{원} + 198,684,853\text{원} + 1,943,403,000\text{원})]$, 원 미만은 반올림.

17) $198,684,853\text{원} - [804,395,362\text{원} \times 198,684,853\text{원} / (452,344,914\text{원} + 198,684,853\text{원} + 1,943,403,000\text{원})]$, 원 미만은 반올림.

18) $1,943,403,000\text{원} - [804,395,362\text{원} \times 1,943,403,000\text{원} / (452,344,914\text{원} + 198,684,853\text{원} + 1,943,403,000\text{원})]$, 원 미만은 반올림.